

Completing a Call/Appointment Form Using ChurchHub

처치협 (ChurchHub)에서 영구서약 목회자 /단기서약 목회자 청빙을 위한 양식 작성법

2020 년4 월7 일

오늘부로 캐나다 연합교회는 교단의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만 단기서약 목회자 청빙(appointments), 단기 서약목회자 임기연장(reappointments), 영구 서약 목회자 (calls) 청빙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영구 서약 목회 또는 단기 서약 목회에 대한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교단의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 온라인 포털 이름은 처치협("ChurchHub")이며 웹주소는 www.churchhub.ca 입니다.

모든 단기서약 목회자와 영구 서약 목회자 청빙은 처치협(ChurchHub)를 통해서 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인쇄된 서류 작업과 서명 과정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 문서는 처치협(ChurchHub)에서 단기서약 목회자 또는 영구서약 목회자 청빙에 필요한 양식 작성의 기본 단계들을 설명합니다.**

1. **목회자 사례비 합의:** 청빙 위원회와 목회자는 사례비에 대해 합의합니다.

목회자 최저 사례비 기준과 혜택 정보는 다음의 온라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ted-church.ca/leadership/church-administration/compensation-and-benefits/compensation-ministry-personnel-0>

목회자의 목회 경력 연차를 입력하면 목회자의 급여 카테고리(A 에서 F 까지)와 목회자 청빙 연도에 해당하는 목회자 최저 사례비 금액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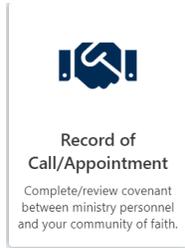
목회자와 교회는 목회자 최저 사례비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할 수는 있지만, 최저 사례비 이하의 금액으로는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2. **처치협(ChurchHub) 계정으로 가십시오. 만일 계정이 없을 시에는 계정 개설을 요청하십시오:**

교회는 처치협(ChurchHub) 온라인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처치협(ChurchHub) 계정이 아직 개설되지 않은 교회의 경우, ministry@united-church.ca 로 이메일을 보내 교회의 정보(교회 이름 및 주소)를 확인한 후, 로그인 및 비밀번호를 요청하여 처치협(ChurchHub) 계정을 만드십시오.

3. 새로운 영구서약 목회/ 단기서약 목회 양식(a new Call/Appointment Form) 작성을

시작하십시오: 교회 계정이 개설되면 다음과 같은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영구서약 목회/ 단기 서약 목회 연합교회 기록 (The UCC Record of Call/Appointment)이 열립니다. 교회의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목회자”(“Ministry Personnel”) 라는 버튼이 표시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로 메뉴가 보입니다. **목회자의 이름, 선호하는 이름, 또는 성**을 입력하면 교회가 특정 목회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목회자 선택이 표시됩니다. 이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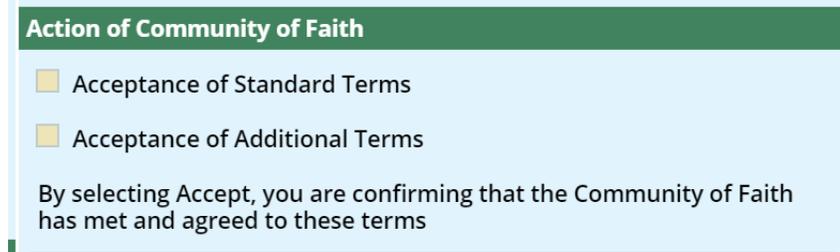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목회자 명단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이 처치협에 (ChurchHub)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그 목회자의 개인 처치협(CHurchHub) 프로필 상에서 “영구 서약 목회 또는 단기 서약 목회 청빙 가능함” “Available for Call or Appointment” 이라는 상자에 체크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 두길 바랍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합의한 사례비 금액을 입력합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최저 사례비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 “추가 급여”(“additional salary”)상자를 이용합니다. 추가 급여액은 백분율 적용 금액(예: 10%) 또는 고정 금액(예: \$1,000)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백분율로 인상 급여를 선택하는 경우, 이 백분율 인상액은 청빙이 진행되는 연도의 목회자 최저 사례비에 근거한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액으로 추가급여를 제공할 경우에도 청빙이 이루어지는 연도의 최저 사례비에 근거하여 추가됩니다. 추가 급여 조건에 대해 목회자와 협상할 때에, 백분율 적용 금액 혹은 고정된 추가 금액 제공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파트 타임 목회자 직책의 경우 연장 교육비(Continuing education)는 풀타임 교육비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비례 적용됩니다. 연장 교육비 인상의 경우, “연장 교육”(“continuing education”) 상자 바로 아래의 “기타”(“other”) 상자에서 인상 금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장 교육”(“continuing education”) 상자에서 생성된 기본 연장교육비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타”(“other”) 상자를 통해서 목회자와 합의한 기타 다른 항목에 대한 추가 사례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신앙 공동체가 영구서약 목회 또는 단기서약 목회 청빙 고용 조건을 수락합니다. 단기서약 목회(appointments), 청빙의 경우, 교회의 운영 결정 기구 (운영위원회/협의회/당회)가 양식에 작성된 내용의 고용 조건을 수락합니다. 영구 서약 목회(calls)청빙의 경우, 개 교회 회중이 고용

조건을 수락해야 합니다. 수락이 완료되면, 교회 처치협 계정에 들어가서, 영구서약 목회/ 단기서약 목회 양식을 열고 신앙 공동체가 고용 조건을 수락했음을 표시합니다:



이 확인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 조건” “Standard Terms” 항목을 열어서 내용을 읽고 담은 후에만 체크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5. 목회자의 수락: 신앙 공동체가 고용 조건에 동의한다는 확인 표시를 하고 난 후에 단기서약 목회 혹은 영구서약 목회로 청빙받은 목회자에게 온라인 양식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이 이메일을 받은 해당 목회자는 고용 조건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6. 지역 협의회(Regional Council)의 수락: 목회자가 자신의 처치협(CHurchHub) 계정을 통해 고용 조건을 수락하면 사본이 지역 협의회로 전송됩니다. 샤이닝워터스 지역협의회(Shining Waters Regional Council)의 목회 관계 위원회 (The Shining Waters Pastoral Relations Commission)는 매달 일회(통상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회의에서 영구 서약 목회 및 단기서약 목회 청빙을 수락합니다. 목회관계 위원회가 수락한 후, 지역회의 목회 관계 담당 목회자(the Pastoral Relations Minister)는 처치협(CHurchHub)에 로그인하여 지역 협의회 수락을 확인합니다.

7. 신앙 공동체와 목회자에게 사본 전송: 지역 협의회 (The Regional Council)가 단기서약 목회 또는 영구 서약 목회 청빙 수락 시, 최종 양식의 사본이 신앙 공동체와 목회자 양측 모두에게 전송됩니다. 이 사본은 각각의 처치협(CHurchHub) 계정의 비공개 폴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치협 온라인 양식 작성 중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a) 영구 서약 목회/단기 서약 목회 양식 작성을 돕는 아래의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Kv7JtJcKcU&feature=youtu.be>

b) 샤이닝워터스 지역 협의회(Shining Waters Regional Council)의 개 교회 연락 담당자(pastoral liaison) 에게 연락하십시오.

c) 연락 담당자가 없는 개교회의 경우에는(예: 단기서약 목회자 임기 연장의 경우 reappointments), 지역회 목회 관계 담당 스태프 목회자(Pastoral Relations Minister)에게 연락하십시오.

407 번 하이웨이 남쪽(south of Highway 407) 에 위치한 교회일 경우에는:

지역협의회 담당목회자 Kim Uyede-Kai 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416-231-7680 ext. 6173 이메일 주소: kuyedekai@united-church.ca